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24.(월) 행사시작(15:00) 이후 | 배포 2025. 2. 24.(월)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 시범사업 참여 중인 **대전 대덕구**에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26), **시행**('26.3.27)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 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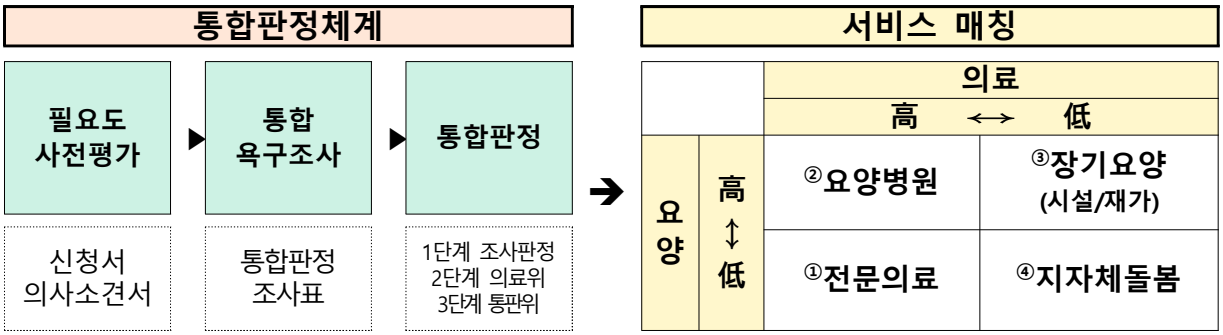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고도화와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 **【지역의료】**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돌봄】**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장애인】**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관련기관】**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개발센터장,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장,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등 9명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라고 언급하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장태영 (044-202-3040)
			사무관	김해순 (044-202-3034)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재형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신제은 (044-202-3495)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재경 (044-202-3140)
		담당자	사무관	전준호 (044-202-31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의료 · 돌봄 통합지원 개요**

□ (목적)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절차) **통합지원 신청 → 조사 → 판정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 제공 → 모니터링**

□ (통합지원 종류) **보건의료**(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 (기반조성)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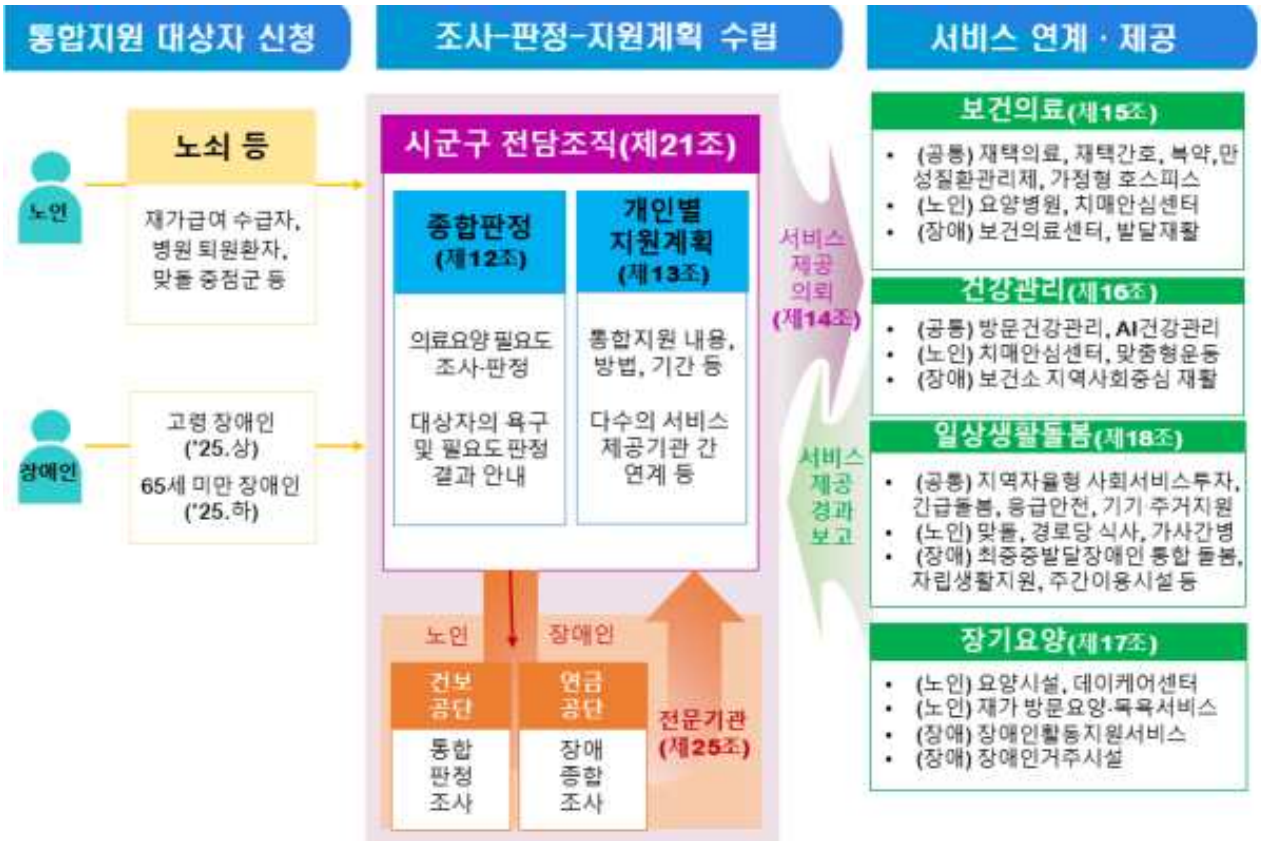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붙임 2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1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 **(목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본모델 정립**

○ **(기간·규모·예산)** **'23.7~'25.12, 12개** 시군구*, **68.8억원**('25년, 시군구당 5.4억)

* 광주서·북구, 대전대덕·유성구, 부천·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 **(대상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및 장기요양등급외자(A,B),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필요자, 퇴원환자

○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관리**, △재가노인 **방문의료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전담조직 등)

* 장기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기존서비스 연계 원칙+부족한 서비스는 지자체가 보충적 개발·제공

○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

2 기술지원형 시범사업(비예산)

○ **(추진배경·목표)** 전국 확대 前, **경험과 추진 의지 높은 자체 추진** 지자체를 **우선 지원**(비예산)하여, **표준모델 제공** 및 **방향성 제시**

○ **(기간·규모)** '24.5~12월, 20개 → ('25년) 35개 시군구*

* 서울 성동·광진·은평, 부산 금정·수영, 대구 달서, 인천 부평·계양, 광주 남구·광산, 대전 중구, 경기 성남·안성·포천·양평, 강원 강릉·춘천·원주·홍천·횡성, 충북 청주·증평·괴산·음성, 충남 청양, 전북 군산·정읍·남원·김제, 전남 담양·영암·영광, 경북 포항·성주, 제주시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중점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은 예산지원형과 동일

<예산지원형 및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특성>

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	지역 내 노인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틈새 서비스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50% 매칭)
기술지원형 (35개 시군구)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유관 사업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 간접 지원

붙임 3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시도 (시군구)	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17 (229)	47	12	35
서울 (25)	3	-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3)
부산 (16)	2	-	금정구, 수영구(2)
대구 (9)	1	-	달서구
인천 (10)	2	-	부평구, 계양구(2)
광주 (5)	4	서구, 북구(2)	남구, 광산구(2)
대전 (5)	3	대덕구, 유성구(2)	중구
울산 (5)	-	-	-
세종 (1)	-	-	-
경기 (31)	6	부천시, 안산시(2)	성남시, 안성시, 포천군, 양평군(4)
강원 (18)	5	-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5)
충북 (11)	5	진천군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4)
충남 (15)	2	천안시	청양군
전북 (14)	5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4)
전남 (22)	4	여수시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3)
경북 (22)	3	의성군	포항시, 성주군(2)
경남 (18)	1	김해시	-
제주 (2)	1	-	제주시

붙임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

○ (제명)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 (정의)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통합 연계·제공'을 '통합지원'으로 하고 대상자를 노인 외 장애인도 포괄(기본법 성격, 제2조)

○ (법률관계, 책무) 이 법의 통합지원 절차가 다른법에 우선함(제3조), 지자체의 포괄적 역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부여(제4조)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 제9조) >

○ (계획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제5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제6조)

○ (성과평가 등) 5년 마다 실태를 조사하고(제7조)하고, 매년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제9조)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 제14조) >

○ (신청·발굴·조사) 본인 등(가족, 관련기관 담당자)이 신청 또는 시군구에서 발굴, 직권 신청(제10조), 의료기관은 퇴원환자 통보(제11조)

○ (종합판정) 의료·요양 필요도 등 종합판정(전문기관 위탁), 안내(제12조)

○ (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제13조), 시군구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의뢰·연계하고, 정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제14조)

< 통합지원 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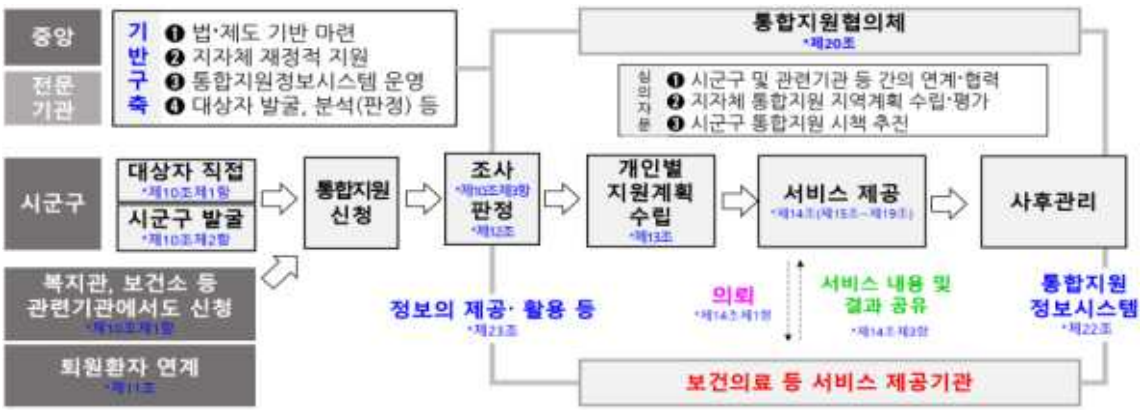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 제19조) >

○ **(보건의료)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5조)

-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진료, 간호**서비스(제1~2호)
- **재활**(제3호) 및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제4호)
- **호스피스** 서비스(제5호), 방문 구강관리(제6호) 및 방문 복약지도(제7호) 등

○ **(건강관리) 노인성질환, 장애, 만성질환 등 예방·완화**(제16조)

○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 **급여 및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제17조)

○ **(일상생활돌봄)** 대상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 자립적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 강화(제18조)

-①가사지원, ②의료기관 등 이동지원, ③보조기기, ④주야간보호
-⑤AI·IoT 안전·건강 확인, ⑥주거지원, ⑦퇴원(소)자 복귀지원, ⑧맞춤형 급여 안내

○ **(가족 등 지원)** 대상자 **가족, 보호자** 등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관리** 노력, 이에 대한 **상담 및 안내**(제19조)

< 제5장 통합지원 기반조성 (제20조 ~ 제25조) >

○ **(협의체·전담조직) 시도·시군구**에 심의·자문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제20조) 및 **시군구 전담조직*** 등 설치 명시(제21조)

* 대상자 관리, 지역자원 발굴·제공,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조정 등

○ **(정보 제공·활용) 각종 자료·정보 처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제22조) 및 대상자 발굴 등 위한 정보 연계(제23조)

○ **(전문인력, 전문기관)** 코디네이팅 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정·지원**(제24조), 대상자 발굴·조사, 종합판정, 평가 등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지원**(제25조)

< 제6장 보칙 (제26조 ~ 제29조), 제7장 벌칙(제30조) 및 부칙 >

○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제29조)

○ **(비용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평가 반영한 **차등 지원**(제28조)

○ **(비밀유지 등)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제27조, 제30조)

○ **(부칙)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부칙 제1조), 사전준비(부칙 제2조)

붙임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 (추진배경) 내실있는 통합지원법 이행 준비 및 관련 실국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제1차관(단장), 인구정책실장(부단장), 4반, 5팀

□ (기간) '26.3.31.까지 운영 (통합지원법 시행일 '26.3.27.)

*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추진상황 지속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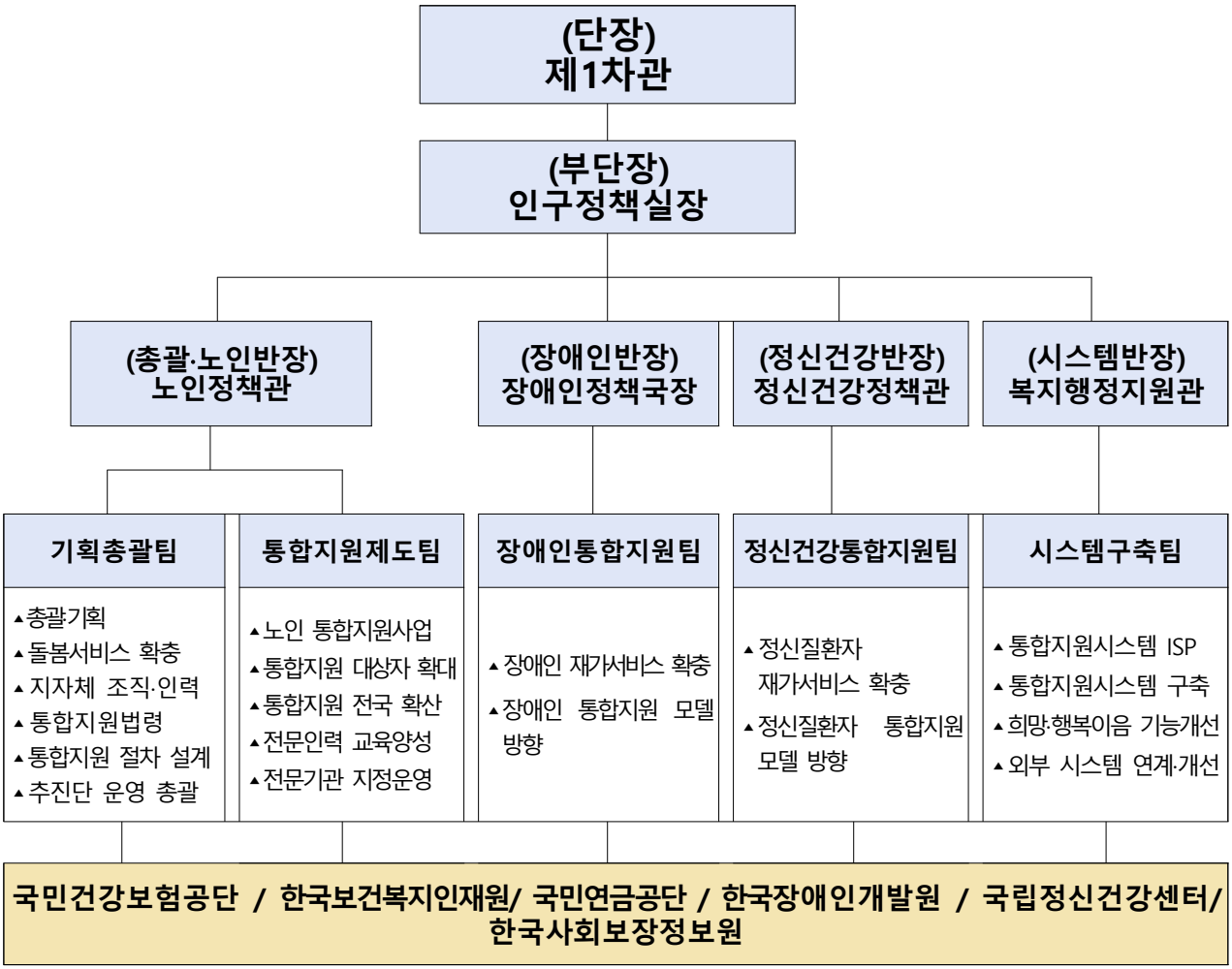

붙임 6 **제7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 (개요) ’25년 의료·돌봄 시범사업 개시에 따른 현장 점검

○ (일시) 2025. 2. 24(월) 15~17시

○ (장소) 대전 대덕구청 대회의실

○ (안건)

① 대덕구 ’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② 통합판정체계 적용을 위한 대덕구-공단 지사 협업체계 현황

○ (참석) <복지부>제1차관(주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소관 과(팀)장, <대전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대덕구>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정책팀장, 통합돌봄사업팀장, 보건소장 <외부전문가>붙임1 참조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비고
15:00~15:05(‘5)	▪ 회의 시작 및 참석자 소개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15:05~15:10(‘5)	▪ 인사 말씀	복지부 제1차관
15:10~15:25(‘10) 15:25~15:55(‘30)	▪ 대덕구 ’25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통합판정체계 협업체계 현황	대덕구 복지문화국장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 부장
15:55~16:55(‘60)	▪ 안건 논의	참석자
16:55~17:00(‘5)	▪ 마무리 말씀	복지부 제1차관

참고 참석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이기일	제1차관	복지부
2	최충규	대덕구청장	대덕구
2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실장	복지부
3	임을기	노인정책관	복지부
4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	복지부
5	장영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복지부
6	신재형	요양보험제도과장	복지부
7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8	성재경	장애인정책과장	복지부
9	이선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의료돌봄연계팀장	복지부
10	장태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통합지원기획팀장	복지부
11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	대전시
12	정 인	대덕구 복지문화국장	대덕구
13	이석우	대덕구 보건소장	대덕구
14	김지임	복지정책과장	대덕구
15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전문기관
16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전문기관
17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	전문기관
18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부장	전문기관
19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장)	의료연계
20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돌봄
21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장애인돌봄
22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장애인
23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정보시스템
24	조미리애	ISP 사업단(VTW) 대표	정보시스템